

# 제48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2017. 6. 2.

문서번호	기획경영팀-1859	선임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7.06.05.	06/02 손현정	06/02 이소미	06/05 박진배	06/05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2208호						

추진근거	- 제48차 임시이사회 개최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1871호, 2017.5.17)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약내용	협약결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시장 승인 안건 2건 요청	승인 대기중

서울디자인재단 (경영지원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무 <input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 제48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재단 제4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완료하고, 총 2건의 심의의결사항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1.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 14:00~16:00
- 장 소 : ddp살림터 2층 북세미나룸
- 참석자 : 총13명 ※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이사회 개의 성원 수 만족
  - 이사 : 12명
    - 선임직 : 안상수(이사장), 이근(대표이사), 고미석 이사, 이남식 이사, 박춘무 이사, 이충기 이사, 방은진 이사, 한문철 이사, 김승언 이사, 정승연 이사(근로자)
    - 당연직 : 고흥석 이사, 이원목 이사
  - 감사 : 1명
    - 선임직 : 서혜정 감사
  - 배석 : 재단 본부장 및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관계자 등
- 상정안건 : 총 6건 (시장 승인사항 2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38호	시장승인
2	보수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시장승인
3	인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이사회결
4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1호	이사회결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2호	이사회결
6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 건	의안번호 제143호	이사회결

## ■ 보고안건 : 총 3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의 건
2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내규 개정의 건
3	신임이사 임명보고

## 2. 상정안건 처리경과

### (1)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38호)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에 의거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의 세입세출 예산 증액

- 세입세출예산증액 : 59,567백만원 → 60,017백만원(450백만원 증액)

구분		예산(증액)	비고
세입조정	합 계	450백만원	600억 ← 596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수입	450백만원	
	입장료 수입	450백만원	(세부내역 별첨1 참조)
세출조정	합 계	450백만원	600억 ← 596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비	450백만원	
	운영비	351백만원	행사장 대관료 지급
	예비비	99백만원	예비비

(2) 예비비 사용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 예비비 4,393백만원 중 2017년 신규사업 등에 4,110백만원 투자

구분	예산	비고
합계	4,110백만원	(세부내역 별첨2 참조)
DDP 운영 관련 세출	1,870백만원	
전시콘텐츠 기획운영	630백만원	하우스 비전, 오프쿠레이팅 등
시설안전안심 운영관리	780백만원	건설통수보안, 시설운영비 등
DDP정보화 사업	300백만원	대관시스템 개발
운영경비	160백만원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재단운영사업 세출	1,743백만원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조성	1,700백만원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공간 조성
운영경비	43백만원	재단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
패션사업 세출	497백만원	
서울패션위크개최	497백만원	패션위크 행사 규모 증가

※ 예비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총계	기존	변경	증감	비고
	4,393	381	Δ4,012	
DDP	2,024	154	Δ1,870	
재단	1,872	129	Δ1,743	
패션	497	-	Δ497	
건축비엔날레	-	98	98	

※ 건축비엔날레 예비비 :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 금액중 일부금액 예비비로 편입

-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 향후절차 : 서울시장 승인 후 시행

**(2)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제139호) : 원안가결**

■ 제안이유

① 『보수규정』제8조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보수규정 제8조(기본연봉 한계액)

- ①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일자리 시책 대응 및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휴일근무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 조정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추진계획(안)』(2016.12)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017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2016.09)

■ 주요골자

① 『보수규정』내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별표6>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를 **2017년 총인건비 기본인상률 기준에 따라 조정**토록 함.

- 2017년 서울시 총인건비 인상률 : **기본인상률 3.5%**(※ 호봉승급분 1.4% 별도)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시장이 결정	
일반직	1급	72,678	75,222	56,376
	2급	66,893	69,234	43,739
	3급	60,385	62,498	37,867
	4급	53,790	55,673	30,402
	5급	46,278	47,898	23,813
	6급	42,350	43,832	20,634
전문직	가급	58,187	60,224	29,182
	나급	51,286	53,081	25,975
	다급	44,969	46,543	22,180
	라급	39,568	40,953	20,173
	마급	34,005	35,195	19,251

⇒ 3.5% 인상

② 『보수규정』<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내 **휴일근무수당 적용범위를 기존 최대 4일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용범위	적용범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 향후절차 : 서울시장 승인 후 시행

**(3)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제140호)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특정감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4567)에 따라 인사규정 내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인사규정 내 직원 정년 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9조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주요골자

- 『인사규정』제5조(임용방법) 1항 내용 중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사규정』제29조(정년) 1항 내용 중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조정

인사규정 제29조(정년)	⇒	인사규정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급부터 2급까지는 만60세 2. 3급 이하는 만 57세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4)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안번호 제141호)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 조정에 따른 퇴직금 하향조정
- 상위법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 개정 : 상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횡수제한보다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어 근로자 불이익 발생

### ■ 주요골자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횡수 제한 조항 삭제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직 중 1회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만 1회로 한정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신설 조항에 명시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명시

## (5)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의안번호 제142호)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 이사회 긴급 소집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마련
  - 불가피하게 사급히 의결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최 기준을 준수할 수 없음
  - 긴급 이사회를 규정에 의해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 수정

- 이사회 개최 운영 기준 : 일반안건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 송부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안건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송부
- \* 단, 상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기준 적용 배제(이사회 소집 통지시 이사장이 서명 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공기업담당관-4799) 1.1 이사회 개최 기준 준수 내용반영]

-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업무 담당 변경
  - 기존 의안설명 담당인 '창의경영실장' 내용을 삭제함

### ■ 주요골자

- 제5조(이사회 소집) 4항 개정
  - ④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서명·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를 별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설명) 개정
  - 이사회 제출안건은 이사회 소관부서 부서장이 설명한다.

## (6) 회계규정 일부 개정(의안번호 제143호)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 회계관계자 직명 중 "회계책임자-창의경영실장"을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변경
- 일계표 및 월계표의 작성을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하여 보고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규정 변경
- 주요골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1호)
    -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금액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5호)
    - 계약서의 작성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이며(제61조),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제8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95조)

---

### 3. 행정사항

---

- 서울시장 승인 요청 공문 발송 (안건 2건, 2017.5.30완료)
- 참석수당 등 이사회 개최비용 회계결의
- 재단 홈페이지에 회의록 및 결과보고 공개

#### 붙임 1. 제48차 임시이사회 개최계획(안)

2. 의결서 및 의사록
3. 안건자료 및 보고안건자료
4. 회의록 1부. 끝.